

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/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공무원단체관련 업무의 신설에 따라 신설업무의 사무분장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제5조(자치행정국에 두는과)제2항의 사무분장 내용에 “공무원단체관련 업무” 내용을 추가 신설

3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제4조

4.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첨부 : 참고자료 1부

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자치행정국에 두는과)제2항중 “5. 공무원단체관련 업무”를 신설하고 5호내지 80호를 6호내지 81호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5조(자치행정국에 두는과) ① · ② (생략) 1~4 (생략) <u>(신설)</u> 5~80 (생략)	제5조(자치행정국에 두는과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1~4 (현행과 같음) 5. <u>공무원단체관련 업무</u> 6~81 (현행 5~80과 같음)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04. 11.

★ 박종철

담당	●과장	국장	부시장	시장
자치행정과 2004. 11. 26	✓	이동호	○	○ 2004. 11. 26

협조: 기획감사실장: 주민자원과장:

기구 및 정원조정 검토



자치행정국
자치행정과

기구 및 정원조정 검토

제천학사의 운영에 따른 기구·정원 조정 및 상급기관의 인력보강

지침에 따른 분석 보고입니다.

□ 제천학사 운영에 따른 인력배치

○ 조직운영

- 기획감사실 서울사무소 직제에 편입운용
 - ➡ 분장사무 추가 : 제천학사 운영 및 관리

○ 인력운영('05. 1월초순 배치)

- 원장 : 서울사무소장 겸직(행정6급)
- 관리인력
 - ➡ 일반사무 1명(행정7급) - 희망자 공개모집
 - ➡ 사감 2명(계약직)
- 운영인력('05. 2월중순 배치)
 - ➡ 영양사 1명(계약직)
 - ➡ 일용직 3명(일시사역인부) - 현지채용

○ 민간위탁

식당운영 및 청소관리에 대하여 1년 정도 직영 후 민간위탁

○ 정원조정

- 일반직 1명 증(행정7급)
- 계약직 3명 증(라급-8급상당)

□ 상급기관 인력보강지침 분석

①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자체 전담기구·인력 보강

- 기능 : 직장협의회 운영지원·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
- 기구 및 정원규모

- 기구명칭 : 공무원단체담당
- 정원규모 : 3명(6급 1, 7급 1, 8급 1)

■ 분석의견

-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완료 후 정식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등 업무까지는 여유가 있으며,
- 도내 타시군의 경우 대부분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금번 정원승인신청(7급1, 8급1) 후, 현재 담당부서에 직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필요시 직제개편 등 기구설치를 검토하고 있음
- 우리시에서도 현재 자치행정과 총무팀에 직원을 증원 배치하여 업무를 전담케 하고, 수요발생 등 도내 형평에 맞춰 기구(담당)를 설치하는게 바람직 함

○ 정원조정

- 일반직 2명 증(행정7급 1명, 9급 1명)
 - 직급별정원책정기준(비율)에 따라 8급을 9급으로 조정

②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보강

- “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”의 시행(05.1.1)에 따른 자연생태계 보전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
- 보강인력
 - 직 렐 : 임업7급
 - 인 원 : 1명(보호구역 면적 1만ha미만 시.군에 해당)

■ 분석의견

-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지원사업추진, 산촌육성 추진, 사유 토지 매수, 개발제한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 추진 등에 전담할 인력보강 필요
- 정원조정
 - 일반직 1명 증(임업8급)
 - 직급별정원책정기준(비율)에 따라 8급으로 조정

정원조정(증원)

직 력	직 급	인 원	비 고
계		7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7급 : 2명(행정) · 8급 : 4명(계약3, 임업1) · 9급 : 1명(행정)
행정	7급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천학사 관리 1 · 공무원단체담당 업무 1
행정(계약) 임업	8급	3 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천학사 사감 및 영양사 3 · 백두대간보호업무전담 1
행정	9급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무원단체담당 업무 1

정원조정 현황(일반직)

구분	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조정전	720	5	44	180	225	175	91
조정후	727	5	44	180	227	179	92
비율(%)	증 7	0.6	6	24.7	31.2	24.6	12.6
기준(%)		1%이내	7%이내	26%이내	30%이내	24%이내	12%이상

* 7급, 8급의 기준이상은 4급, 5급의 기준이하와 상계조정

정원총계

구분	계	일반직 (연구.지도직)	기능직	별정 · 정무
조정후	969	761(34)	191	17
비율(%)		78.5	19.7	1.7
기준(%)		78%이상	20%이내	2%이내

* 표준정원 948명 대비 증21명

* 보정정원 976명 대비 △7명

정 1995. 12. 26, 1998. 8. 31>

②삭제 <1998. 8. 31>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께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 12. 28, 1998. 8. 31>

■ 제8조(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등의 직급기준) ①시·도 본청에 두는 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 및 과장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1995. 5. 16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 본청에 두는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은 담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1995. 5. 16>

■ 제9조(과·담당관등의 설치) 시·도 본청에 두는 과·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1997. 2. 4, 1998. 8. 31>

제3장 시·군·구의 기구

■ 제10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 및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1998. 8. 31>

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·국 또는 실·과·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·군·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·국 또는 실·과·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1999. 9. 9>

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 실·과·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1998. 8. 31>

④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1998. 8. 31>

⑤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⑥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의 영향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8. 31>

[전문개정 1997. 2. 4]

■ 제10조의2(실장·국장·담당관·과장등의 직급기준)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장·국장·담당관 및 과장등 보조·보좌기관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[본조신설 1997. 2. 4]

제4장 시·도·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등

■ 제10조의3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)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·도의 의회사무처,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, 의회사무국장·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시·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두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·의회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<개정 1998. 8. 31>

④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신설 1999. 9. 9, 2000. 12. 30>

[본조신설 1997. 2. 4]

■ 제11조(지방농촌진흥기구)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·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여 농업기술원을 두며,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·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속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두 수 있다. <개정 1998. 8. 31>

②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시장·군수 소속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두 수 있으며,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두 수 있다. <개정 1997. 2. 4, 1998. 8. 31>

③농업기술원에는 원장(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)을 두며, 원장은 도지사(소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및 군수)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합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1998. 8. 31>

④이 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농업기술원·농업기술센터 및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8. 8. 31>

⑤농업기술원에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, 농업기술센터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두 수 있